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sup>5</sup>  
B65D 55/02

(45) 공고일자 1993년01월25일  
(11) 공고번호 특 1993-0000537

(21) 출원번호	특 1988-0008409	(65) 공개번호	특 1989-0001864
(22) 출원일자	1988년07월07일	(43) 공개일자	1989년04월06일
(30) 우선권주장	P37 22 330.5 1987년07월07일 독일(DE)		
(71) 출원인	젤러 플라스틱 코엔, 그래브너운트 콤파니 독일연방공화국, 젤 데-5583, 바를슈트라쎄 46 요헨코엔		

(72) 발명자  
요헨 코엔  
독일연방공화국, 젤 데-5583, 베르크빈켈 4  
(74) 대리인  
나영환

**심사관 : 김해중 (책자공보 제3113호)**

---

**(54)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흙안에 라벨이 장착된 용기, 특히 병의 밀봉부의 사시도.

제2도는 라벨이 부분적으로 벽에 의해 둘러싸여 오목부에 수용되어 있는 밀봉부의 사시도.

제3도는 제2도의 밀봉부의 상세도.

제4도는 라벨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 : 밀봉부 하단부

6 : 뚜껑

8 : 스냅힌지

10 : 결합 함몰부

12 : 라벨

16, 18, 20 : 모서리면

22 : 편자형벽

24 : 브리지

26 : 슬릿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라벨은 통상 밀봉부를 밀봉된 상태로 유지시킨다. 일반적으로 2개의 밀봉부가 있는데 하단부와 뚜껑이다. 그러나, 더많은 밀봉부가 동일한 라벨에 의해 함께 유지될 수 있는데, 예를들면 중간링이 부가될 수 있다. 라벨이 소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용기가 최초로 채워진 후 밀봉부가 개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래의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은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변조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의 밀봉부는 하단부(4)와 헌지식 뚜껑(6) 및 스냅힌지(8)를 구비한다. 하단부는 결합함몰부

(10)을 가지고 있다.

라벨(12)는 밀봉부의 하단부(4)와 뚜껑(6)을 연결한다.

라벨이 뚜껑(6)과 하단부(4) 사이의 접합평면(14)에서 찢어지거나 절단되어 있다면, 이는 밀봉부가 개방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라벨이 벗겨지고 개방(용기 내용물의 변조) 및 재밀봉된 후, 다시 붙여지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특징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다수의 특징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봉주재상에는 라벨의 크기 및 외형과 가능한한 정밀하게 일치하는 편평한 흠(15,19)가 있으며, 도시한대로 라벨(12)는 이 흠(15,19)내에 접착된다. 이 흠(15,19)는 사람들이 손톱이나 다른 도구를 라벨 아래에 집어넣어 라벨을 들어 올리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 협소한 모서리면(16,18,20)을 구비한다. 이 모서리면들은 밀봉부의 인접면의 영역과 예리한 모서리로 만나며, 특히 직각으로 만나게 된다.

사용자가, 예를들면 라벨이 수집품 또는 기념품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라벨을 손상시키지 않고 벗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편평한 흠(19) 대신에, 하나의 밀봉부재, 즉 이 경우에는 뚜껑(6)의 상부면에서, 라벨의 하나이상의 단부에 대략 편자형의 벽(22)를 설치한다.

상기 벽은 뚜껑 위에 사출 성형되며, 사용자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상기 편자형 벽을 부러뜨린 후, 사용자는 라벨의 노출된 모서리에 접근할 수 있어 라벨을 파손하지 않은채 벗겨낼 수 있다.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벽은 단지 몇개의 브리지부(23)에 의해서만 뚜껑에 연결되며,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얇은 슬릿(slit)(26)에 의해서 뚜껑으로부터 이격되어 있어서, 미리 설정되는 파단선이 생기게 된다. 벽을 제거하면, 벽(22)에 연결되었던 브리지부(24)의 잔류조각이 남게 되는데, 이는 벗겨진 라벨이 또다른 라벨로 대체되더라도 용기가 이미 개방되었음을 알려준다.

부가적인 원품의 보장을 위해, 라벨은 단지 단일의 접착과정만으로 접착되어지는 접착제로 접착될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접착제로 또다시 접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적당한 재료를 선택한다 해도,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여서는 후속접착이 불가능하게 된다.

라벨은 2개의 층, 특히 밀봉부를 향하는 내부층(13)과, 외부층(11)로 구성될 수 있다. 내부층(13)은 접착제에 의해 영구적으로 밀봉 또는 고정된다. 외부층(11)은 단지 단일 접착 과정으로만 접착될 수 있고 떼어낼 수 있는 접착제에 의해 내부층(13)에 연결된다. 외부층(11)이 떼어질 수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구별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층(13)은 “용기개방”과 같은 인쇄를 구비할 수 있다.

라벨(12) 또는 적어도 그 외부층(11)은 벗겨낼 때 찢어져 버리는 각각의 표면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스스로 파손되는 라벨은 다양한 적용예로부터 공지되어 있는데, 예로서 차량번호판용 식별표지 또는 소매상점에서의 음식용 가격표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층은 지폐에서와 같은 방식의 위조확인용 인쇄(9)를 구비할 수 있으므로 라벨을 위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며, 위조된 라벨이 사용되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벗겨지거나 파손된 후에 용기가 개방되었음을 알려주는 라벨을 구비하는, 용기의 밀봉부, 특히 병의 밀봉부로 사용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에 있어서, a) 개방될때 서로 떨어지는 밀봉부(4,6)은 라벨(12)를 수용하기 위한 편평한 흠(15,19)를 구비하며, b) 상기 흠(15,19)는 하나의 밀봉부(4)로부터 다른 밀봉부(6)까지 일체로 형성되며, 라벨(12)의 외형 및 크기와 동일한 외형 및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2

벗겨지거나 파손된 후에 용기가 개방되었음을 알려주는 라벨을 구비하는, 용기의 밀봉부, 특히 병의 밀봉부로 사용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에 있어서, a) 개방될때 서로 떨어지는 밀봉부(4,6)은 라벨(12)를 구비하고 라벨(12)의 부착에 의해 밀봉된 상태로 유지되며, b) 상기 라벨(12)의 적어도 일단부는 밀봉부(4 또는 6)의 표면으로부터 둘출된 벽(22)에 의해 라벨(12)와 벽(22) 사이에 공간이 없는 상태로 둘러싸이며, 라벨(12)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상기 벽(22)을 부러뜨려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벽(22)에 의해 둘러싸이지 않는 라벨(12)의 전부분이 부착되는 밀봉부에는 흠(15)가 설치되며, 흠(15)는 상기 벽(22)에 의해 둘러싸이지 않는 라벨(12)의 전부분과 동일한 외형 및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흠(15,19)는 상기 밀봉부(4,6)의 인접면의 영역과 상기 흠(15,19)와 예리한 모서리로, 특히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면(16,18,20)에 의해 둘레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12)는 단일의 접착 과정만으로 접착되는 접착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a) 상기 라벨(12)는 내부층(13) 및 외부층(11)의 2개의 분리가능한 층을 구비하며, b) 상기 내부층(13)은 접착 또는 밀봉에 의해 상기 흄(15,19)내에 영구히 부착되며, c) 상기 외부층(11)은 떨어질 수 있는 접착제에 의해 상기 내부층(13)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층(13)은 밀봉부(4,6)이 개방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층(11)은 위조확인용 인쇄(9)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12) 또는 적어도 그 외부층(11)은 벗겨낼 때 찢어져 버리는 각각의 표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벽(22)는 미리 설정한 파단선을 따라 하나의 밀봉부(4 또는 6)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벽(22)는 몇개의 부서지기 쉬운 브리지부(24)만에 의해 하나의 밀봉부(4 또는 6)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흄(15,19)는 상기 밀봉부(4,6)의 인접면의 영역과 상기 흄(15,19)와 예리한 모서리로, 특히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면(16,18,20)에 의해 둘레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12)는 단일의 접착 과정만으로 접착되는 접착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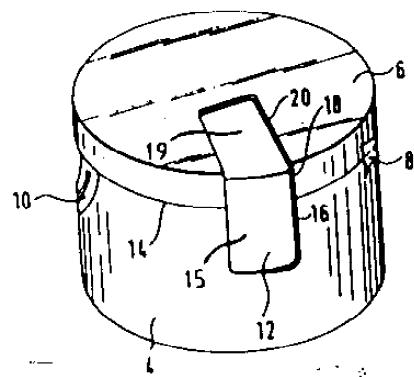
제2항에 있어서, a) 상기 라벨(12)는 내부층(13) 및 외부층(11)의 2개의 분리가능한 층을 구비하며, b) 상기 내부층(13)은 접착 또는 밀봉에 의해 상기 흄(15,19)내에 영구히 부착되며, c) 상기 외부층(11)은 떨어질 수 있는 접착제에 의해 상기 내부층(13)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청구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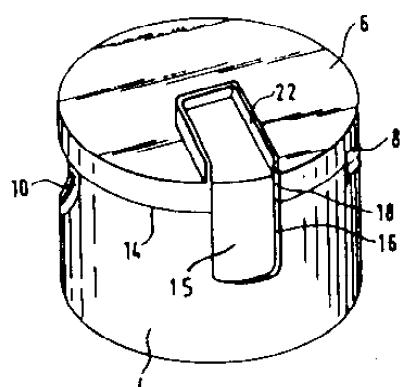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12) 또는 적어도 그 외부층(11)은 벗겨낼 때 찢어져 버리는 각각의 표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품을 보장하기 위한 용기의 밀봉 구조물.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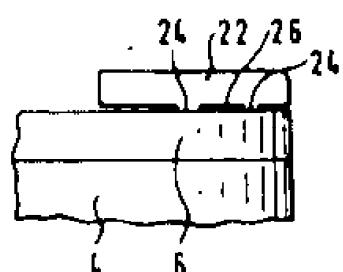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